



KOLAS-R-002 : 2025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의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KOLAS 로고”란 인정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2. “KOLAS 인정마크”란 KOLAS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하며, 이 마크에는 KOLAS 로고에 KOLAS 공인기관의 인정번호와 인정스킴이 함께 표시된다.
3. “ILAC-MRA 조합마크(Accredited CAB Combined ILAC-MRA Mark)”란 인정기구가 ILAC-MRA를 체결한 분야의 공인기관이 인정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KOLAS 인정마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ILAC-MRA 마크를 말한다.
4. “IAF-MLA 조합마크”(Accredited CAB Combined IAF-MLA Mark)란 인정기구가 IAF-MLA를 체결한 분야의 공인기관이 인정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KOLAS 인정마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IAF-MLA 마크를 말한다.
5. “신청기관”이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관 모두에 해당된다.

6.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란 KOLAS 공인기관이 인정 받은 적합성평가활동에 사용하는 측정기기 등에 대해 측정소급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사용 목적(인정범위에 미포함)으로 수행하는 교정을 말한다.
7. “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란 시험소간 비교를 통하여 사전에 수립된 기준에 따라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KOLAS 공인성적서”란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LAS 인정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교정성적서,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메디컬시험 결과보고서,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보고서, 표준물질 인증서, 생물자원 인증서, 제품인증서 및 계획검증서 또는 결과검증서를 말한다.

제2장 인정기준 등

제3조(인정분야 및 인정범위) ①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스킴별 인정분야 분류 및 인정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범위를 표시할 때 유사한 품목 및 방법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인정기준) ① KOLAS 공인기관의 평가 및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가이드 또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지침 등의 문서를 추가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기술된 기준 이외에 기술적 신

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KOLAS 공인기관에 별도의 기술 지침 등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침 등은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숙련도시험 등)** ① KOLAS 공인기관 중 교정, 시험,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인정신청에 앞서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에 참가하여 측정능력을 입증받아야 하고, 그 실적과 참가 계획을 인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분야의 측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시험소(자)간 또는 측정심사에 주기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③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주기 및 참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KOLAS-R-007)에 따른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자체규정에 따라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인정절차 등

제6조(인정절차 안내)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의 평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인정요건을 기술한 문서와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쇄물 또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기관의 요건) ① 신청기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누구든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 또는 인정 프로세스의 어떤 시점에서든 부정행위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신청기관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을 반려하거나 인정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신청 및 평가) ① 신청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이 요령의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서는 별도 제출).

② 인정신청절차, 수수료,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평가업무 절차, 평가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에 따른다.

제9조(평가결과 심의) ①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각 스킴별 인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위원회는 인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와 함께 신청기관이 KOLAS 공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인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인정스킴별 기술위원회에 인정심의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류, 인정불가, 인정정지, 인정취소 등을 선택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신청 기관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인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⑤ 신청기관이 현장평가에 대한 시정조치가 불가함을 인정기구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불가, 인정정지 또는 인정취소

로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 정지 또는 취소를 통보한다.

⑦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정행위조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 이 요령 제17조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위원회가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정 및 공고)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가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사항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4장 KOLAS 공인기관의 정기검사, 인정 분야 변경(인정 범위 확대 포함) 및 재평가

제11조(KOLAS 공인기관 유효기간) 법 제9조에 따라 KOLAS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며, 인정 분야 확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인정 분야 변경 등) ①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KOLAS 공인기관의 인정 분야 및 범위에 대한 확대(사업장 소재지, 인정분야 및 범위의 추가)와 변경(인정 분야 및 범위와 관련하여 확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정 분야 확대 : 최초평가와 동일한 절차 적용. 단, 신청시 동일 중분류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문서심사를 포함

- 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심사 생략 가능. 확대와 동일한 중분류의 인정 분야 변경 신청이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지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
2. 인정 분야 변경 :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문서심사, 현장평가, 인정심의 및 인정공고 생략 가능

제13조(정기검사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초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검사 전에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 확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정범위 확대를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신청하는 경우 확대평가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KOLAS 공인기관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정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2. KOLAS 공인기관의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해 인정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사항 조사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예견되는 경우
3. 부적격한 인원, 시설 및 장비 등에 의한 적합성평가 수행 사례 발생 시
4. KOLAS 공인기관의 적합성평가결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5.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제반 비용은 인정기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재평가) ① KOLAS 공인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재평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와 인정범위 확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와 평가서류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인정심의회는 재평가 부분과 인정범위 확대 부분을 분리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② 재평가 신청시 인정 분야 변경 신청이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시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한다.
- ③ 제1항의 재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그밖의 변경 신고) KOLAS 공인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인기관 명칭
- 2.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 3.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
- 4. 대표자·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및 조직 구조에 관한 사항
- 5. 공인기관의 능력 충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제16조(휴업·폐업 사실의 통지) ① KOLAS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인기관 휴업·폐업통지서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정기구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과 휴업·폐업 기간 및 범위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KOLAS 공인기관이 인정 유효기간 내에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최대 6개월 내로 하며, 2회까지만 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KOLAS 공인기관이 휴업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업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휴업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에 대하여 인정기준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제4항에 의해 해당 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한다.

⑥ 휴업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업무 재개시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된다.

제17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KOLAS 공인기관 인정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인력·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의 결함분류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신청기관의 귀책사유(재평가 신청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평가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관사정으로 인한 평가연기 등)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지나서 평가가 진행되는 KOLAS 공인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갱신 인정공고일까지 인정표시 및 KOLAS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표시 및 KOLAS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또는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의견제출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에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으며, 기술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인정기구의 장은 청문 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3항에 의한 의견제출 사항을 인정제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 ⑦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표시 및 KOLAS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또는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제1호, 제3호, 처분사항 및 범위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인정기구의 장은 처분의 사유가 제7조제2항의 사유 또는 인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표준(예. KS Q ISO/IEC 17025 등)에 대한 제3자 적합성평가 제공에 따른 경우, 처분 공고 후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
- ⑨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표시 및 KOLAS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이 중지된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자격 재개 시에는 현장평가 또는 해당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⑩ 인정기구의 장은 제9항에 의해 해당 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정자격 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8조(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① 인정제도 운영 또는 평가사 등록 등과 관련하여 인정기구 또는 KOLAS 공인기관에 이의, 불만이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 ② 인정기구의 장은 이해당사자로부터 불만을 제기 받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불만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기된 불만사항이 KOLAS 공인기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해당기관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신청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공인기관 인력 등

제19조(공인기관의 핵심인력) ① KOLAS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역할을 수행하는 자(내부적으로 규정한 용어와는 상관없이)를 핵심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품질책임자 : 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 및 개선 등
2. 기술책임자 :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기술적 책임을 지는 인원(해당 분야별)

제20조(인력의 적격성) ① KOLAS 공인기관은 관련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력의 적격성기준을 수립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기술책임자와 적합성평가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은 별표 5의 역량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핵심인력의 등록) ① 품질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이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KOLAS-R-005)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에 기등록된 품질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의 그밖의 변경신고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의 신고 사유에 인력변경 비교 내용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핵심인력의 변경은 인정기구의 장에 통보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적격성은 차기 현장평가에서 확인하며, 핵심인력의 변경에 따른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핵심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6장 KOLAS 공인기관의 의무

제22조(KOLAS 공인기관의 의무) ① KOLAS 공인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과 인정받은 모든 인정분야 및 범위에 대하여 인정기구가 규정한 인정절차 및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KOLAS 공인기관은 모든 소재지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정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KOLAS 공인기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공평성 또는 독립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발행한 모든 성적서와 이와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KOLAS 공인기관은 KOLAS 공인성적서 발급실적, 인증업체 사후관리 실적 등 인정과 관련하여 인정기구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KOLAS 공인 제품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은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사 및 관련 조치(인증취소 등)를 취하고 이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정을 언급할 때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6)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이 요령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평가서류 등을 인정기구의 장에게 신청 또는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 유지 등

- 제25조(교정의 일반수칙)** 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측정기의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측정표준에 소급된 상위 표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측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국가측정표준에 소급된 상위 표준기 또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내부교정을 실시한 때에도 적합한 교정으로 간주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교정은 해당 교정 능력을 갖춘 적절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환경조건하에서 유효성이 확인된 교정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고정표준실이 아닌 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현장교정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LAS 공인교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26조(교정방법의 개발)** 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협회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정밀측정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교정방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된 교정방법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회에서 제출한 교정방법이 KS Q ISO/IEC 17025(ISO/IEC 17025)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유효성 확인이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교

정방법의 내용 및 절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효성 확인 등을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KOLAS-R-001) 제6조에 따른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요령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제2023-0702호, 2023.01.10.)에 의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공인기관 처분, 기술책임자·품질책임자 등록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인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운영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되어 진행된 인정 절차는 이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5-009호, 2025.0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서류 중 상표 등록증에 대한 개정사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서류 중 상표 등록증에 대한 개정사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제2023-0657호, 2023.12.19.)에 의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공인기관 처분, 기술책임자·품질책임자 등록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인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운영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되어 진행된 인정 절차는 이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본다.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KOLAS 공인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제3조 관련)

1. KOLAS 공인교정기관

- 가. KOLAS 공인교정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한다. 소분류 등 세부 분류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에 따른다.
- 나. KOLAS 공인교정기관의 인정범위는 분류번호 및 측정량/장비, 현장교정가능 여부(Y, N), 교정방법, 교정범위, 측정불확도 등 교정·측정 능력(CMC : 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y)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1. 길이 및 관련량 (Length and related quantities)	101 복사선의 주파수(Frequency of radiation)
	102 선형치수(Linear dimension)
	103 각도(Angle)
	104 형상(Form)
	105 복합형상(Complex geometry)
	106 기타 길이 관련량(Various dimensional)
2. 질량 및 관련량 (Mass and related quantities)	201 질량(Mass)
	202 힘(Force)
	203 토크(Torque)
	204 압력(Pressure)
	205 진공(Vacuum)
	206 부피(Volume)
	207 밀도(Density)
	208 점도(Viscosity)
	209 유체유동(Fluid flow)
	210 경도(Hardness)
	211 충격(Impact)
3. 시간 및 주파수 (Time & frequency)	301 시간/주파수(Time/frequency)
	302 속도/회전수(Velocity & revolution)

대분류	중분류
4. 전기·자기/전자파 (Electricity & magnetism)	401 직류(DC volatage & current)
	402 저항, 용량 및 인덕턴스 (Resistance, capacitance and inductance)
	403 교류 및 교류전력 (AC voltage, current & power)
	404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Other DC & LF measurements)
	405 저주파 전자기장 (Low frequency electric & magnetic field)
	406 RF 측정(Radio frequency measurement)
	407 전자기장의 세기 및 안테나 (Field strength & antenna)
5. 온도 및 습도 (Temperature & humidity)	501 접촉식 온도(Contact thermometry)
	502 비접촉식 온도(Non contact thermometry)
	503 습도(Humidity)
	504 수분(Moisture)
6. 음향 및 진동 (Sound & vibration)	601 음향(Sound in air)
	602 수중음향(Sound in water)
	603 진동(Vibration)
7. 광량 (Photometry & radiometry)	701 광도(Photometry)
	702 광원 및 검출기 (Property of detectors & sources)
	703 매질특성(Property of materials)
	704 광통신(Fiber optics)
8.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801 방사선(Dosimetry)
	802 방사능(Radioactivity)
	803 중성자(Neutron measurement)
9. 물질량 (Amount of substance)	901 화학분석(Chemical analysis)
	902 메디컬 기준 측정 실험실 (Medical reference measurement laboratories)

2. KOLAS 공인시험기관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한다.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는 시험되는 물질 또는 제품,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시험품목 또는 시험범위 및 검출한계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01 역학시험 (Mechanical Testing)	01.001 금속 및 관련제품(Metal and related products)
	01.002 섬유 및 관련제품(Textile and related products)
	01.003 시멘트 및 관련제품(Cement and related products)
	01.004 골재 및 관련제품(Aggregate and related products)
	01.005 목재 및 관련제품(Timber and related products)
	01.006 토질 및 관련제품(Soil and related products)
	01.007 유리와 유리제품(Glass and glass products)
	01.008 종이와 관련제품(Paper and related products)
	01.009 고무와 관련제품(Rubber and related products)
	01.010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Plastic and related products)
	01.011 가죽 및 관련제품(Leather and related products)
	01.012 기계요소(Mechanical elements)
	01.013 물리적 시험(Physical tests)
	01.014 측정용 기계기구(Measuring machines and tools)
	01.015 산업용 기계(Industrial machinery)
	01.016 건설 및 건축재(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materials)
	01.017 생활용품(Household items)
	01.018 발전, 원자력 관련 제품(Power generation, nuclear energy related products)
	01.019 안전장구(Safety gear)
	01.020 철도차량 및 관련 제품 (Railroad vehicles and related products)
	01.021 자동차 및 관련제품(Automobiles and related products)
	01.022 선박(Ship)
	01.023 항공 및 우주 관련제품(Aviation and space related products)

대분류	중분류
02 화학시험 (Chemical Testing)	02.001 철강(Steel)
	02.002 비철(Non-ferrous metals)
	02.003 기타 금속(Other metals)
	02.004 광산 및 요업 관련제품 (Mining and ceramic-related products)
	02.005 무기재료 및 제품 (Inorganic materials and products)
	02.006 유기재료 및 제품 (Organic materials and products)
	02.007 방사선, 방사능, 중성자 (Dosimetry, radioactive, neutron measurement)
	02.008 기타재료 및 제품(Other materials and products)
	02.009 무기약품 (Inorganic chemicals)
	02.010 유기약품 (Organic chemicals)
	02.011 기타약품 (Other chemicals)
	02.012 가스류 (Gases)
	02.013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
	02.014 페인트 (Paints)
	02.015 고무 (Rubber)
	02.016 기타 석유제품(Other petroleum products)
	02.017 식품(Foods)
	02.018 화장품(Cosmetics)
	02.019 농축산물(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02.020 의약품(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02.021 수질(Water quality)
	02.022 폐수 및 폐기물(Waste water and wastes)
	02.023 대기(Air)
	02.024 토양(Soil)
	02.025 실내 및 기타환경(Indoor and other environments)
	02.026 섬유(Textile)
	02.027皮革(Leather)
	02.028 종이(Paper)
	02.029 임상(Clinical trial)
	02.030 도핑(인체, 동물)(Doping(human, animal))
	02.031 생화학(Biochemistry)
	02.032 사무용품(Office supplies)
	02.033 가정용품(Household products)
	02.034 유아용품(Baby products)
	02.035 기타 일용품(Other daily necessities)

대분류	중분류
03 전기시험 (Electrical Testing)	03.001 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Electric cords, cables and circuits)
	03.002 배선기구류(Wiring appliances)
	03.003 대전력, 고전압 기기 (High-power, high-voltage machinery)
	03.004 전기재료 및 부품 (Electrical materials and components)
	03.005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nts)
	03.006 산업용 전기기기 (Electrical machinery for industries)
	03.007 가정용 전기기기 (Electrical machinery for households)
	03.008 유·무선 통신기기 (Wired/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03.009 조명기기(Lighting devices)
	03.010 의료기기(Medical devices)
	03.011 전자기적합성(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03.012 소프트웨어(Software)
	03.013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03.014 환경 및 신뢰성(Environment and reliability)
04 열 및 온도측정 (Heat & Temperature Measurement)	04.001 온도 및 습도(Temperature and humidity)
	04.002 화재(Fire)
	04.003 냉난방기기(Cooling/heating units)
05 비파괴시험 (Non Destructive Testing)	05.001 금속 및 관련제품(Metal and related products)
	05.002 비금속 및 관련제품 (Base metal and related products)
	05.003 고무와 관련제품(Rubber and related products)
	05.004 기타 제품(Other products)
06 음향 및 진동시험 (Sound and Vibration Testing)	06.001 음향특성(Sound characteristics)
	06.002 진동특성(Vibration characteristics)
	06.003 동적 밸런싱(Dynamic balancing)

대분류	중분류
07 광학 및 광도측정 (Optics and Photometry Testing)	07.001 광학결상(Optical image formation)
	07.002 복사측정(Radiation measurement)
	07.003 분광특성(Spectral characteristics)
	07.004 광원(Light sources)
	07.005 색채 및 색도(Colors and chromaticity)
	07.006 조명장치 및 응용기구 (Lighting devices and applied apparatus)
	07.007 광통신 기기 및 관련제품 (Optical communications equipments and related products)
09 생물학적시험 (Biological Testing)	09.001 약물(Drug)
	09.002 미생물(Microorganisms)
	09.003 살충제(Pesticides)
	09.004 육상동물(Terrestrial animals)
	09.005 육상식물(Terrestrial plants)
	09.006 수중생물(Aquatic life)
	09.007 유전자(Gene)
	09.008 세포 및 GMO(Cell and GMOs)
10 법과학시험 (Forensic Science Testing)	10.001 규제 물질류(Regulatory materials)
	10.002 독극물(Poisons)
	10.003 면역혈청학 검사(Immuno-serology testing)
	10.004 DNA형 검사(DNA-type testing)
	10.005 증거물(Trace evidence)
	10.006 총기 및 탄(Firearms and bullets)
	10.007 필적 및 문서(Handwriting and document)
	10.008 지문(Fingerprints)
	10.009 흔/흔적(Traces/signs)
	10.010 오디오/이미지분석(Audio/computer analysis)
	10.011 사고조사(Accidentology)
	10.012 현장조사(On-site investigation)
	10.013 법의학(Forensic pathology)
	10.014 법생물학(Entomology)
	10.015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3. KOLAS 공인검사기관

KOLAS 공인검사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한다. KOLAS 공인검사기관의 인정범위는 검사기관의 유형, 검사품목, 검사분야 (field), 검사범위 (range), 검사방법(기준) 등을 포함한다.

대분류	중분류
01 산업용설비 및 기계 (Industrial facilities and machinery)	01.001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 (Inspection of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01.002 전기전자제품 검사 (Inspection of eclectic/electronic products)
	01.003 승강기 검사(Inspection of elevators)
	01.004 냉동설비 검사 (Inspection of refrigeration equipment)
	01.005 저장탱크 검사 (Inspection of storage tanks)
02 공산품 및 소비제품 (Industrial and consumer products)	02.001 전기전자제품 검사 (Inspection of electric/electronic products)
	02.002 열기기 검사 (Inspection of heating apparatus)
	02.003 생활용품 검사 (Inspection of household items)
	02.004 완구 검사(Inspection of toys)
	02.005 계량기 검사(Inspection of gauges)
	02.006 주방용품 검사 (Inspection of kitchen appliances)
03 재료 및 부품 (Materials and components)	03.001 자동차부품 검사 (Inspection of automotive components)
	03.002 궤도차량부품 검사 (Inspection of railroad vehicle components)
	03.003 금속재료 검사 (Inspection of metallic materials)
04 식품 및 농수산물 (Foods and agricultural)	04.001 식품검사(Inspection of foods)
05 건설 및 토목	05.001 화재 및 방재검사

대분류	중분류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Fire and fire-proof inspection)
	05.002 음향특성 검사 (Inspection of sound characteristics)
	05.003 가설기자재 검사 (Inspection of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s)
	05.004 타일 검사(Inspection of tiles)
06 교통(운송, 여행) (Traffic (Transportation and travelling))	06.001 교통장비 검사 (Inspection of traffic equipment)
07 환경 (Environment)	07.001 환경(Environment)
08 보건 및 의료 (Healthcare)	08.001 보건 및 의료(Healthcare)
09 에너지 및 자원 (Energy and resources)	09.001 원자력발전설비 검사 (Inspection of nuclear energy facilities)
	09.002 액화석유가스 검사 (Inspec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es)
	09.003 발전설비 검사 (Inspect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09.004 도시가스시설 검사 (Inspection of city gas facilities)
	09.005 석유 및 관련제품 검사 (Inspection of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09.006 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 (Inspec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facilities)
10 산업안전 (Industrial safety)	10.001 방폭기기 검사 (Inspection of explosion-proof equipment)
	10.002 소방기기 검사 (Inspec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4.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분야는 각각 KOLAS 공인교정, 시험 및 메디컬시험기관 인정분야 분류기준에 따른다.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인정범위는 품목(item)/매질(matrix), 측정량 또는 특성(measurands or characteristics), 숙련도시험 스킴(schemes),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비교(notes) 등을 포함한다.

5.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한다.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의 인정범위는 표준물질의 유형, 표준물질 매트릭스 또는 인공물, 속성/특성화된 속성, 속성값을 부여하는데 사용된 접근법 등을 포함한다.

가. 대분류 : 1. 화학조성(Chemical Composition)

중분류	소분류
101. 철금속 (Ferrous metals)	01. 저합금강(Low alloy steels)
	02. 탄소강(Carbon steels)
	03. 스테인레스강(Stainless steels)
	04. 고합금강(High alloy steels)
	05. 공구강(Tool steels)
	06. 특수저합금강(Special low alloy steels)
	07. 특수강(Specialty steels)
	08. 제강금속(Steelmaking alloys)
	09. 주철(Cast irons)
	10. 주강(Cast steels)
	11. 철이원금속(Ferrous binary metals)
	12. 철금속 중의 가스(Gases in ferrous metals)
	13. 기타(Other)
102. 비철금속 (Nonferrous metals)	01. 알루미늄합금(Aluminum base alloys)
	02. 동합금(Copper base alloys)
	03. 납합금(Lead base alloys)
	04. 아연합금(Zinc base alloys)
	04. 아연합금(Zinc base alloys)
	05. 니켈합금(Nickel base alloys)
	06. 티타늄합금(Titanium base alloys)
	07. 지르코늄합금(Zirconium base alloys)
	08. 비철이원금속(Nonferrous binary metals)
	09. 비철금속중의 가스(Gases in nonferrous metals)
	10. 기타(Other)
103. 미세분석용	01. 금속(Metals)

중분류	소분류
(Microanalysis)	02. 비금속(Nonmetals)
	03. 유리 및 세라믹(Glasses and ceramics)
	04. 표면분석(Surface analysis)
	05. 기타(Other)
104. 고순도표준시약 (High purity chemicals)	01. 고순도 금속(High purity metals)
	02. 적정용 고순도 표준시약(Stoichiometry)
	03. 열량측정용(Calorimetry)
	04. 열분석기기 교정용(Thermal analyzer)
	05. 기타 고순도 무기시약(High purity inorganic chemicals)
	06. 고순도 유기시약(High purity organic chemicals)
	07. 동위원소물질(Stable isotopic chemicals)
	08. 기타(Other)
105. 표준 용액 (Calibration solutions)	01. 적정용 표준용액(Stoichiometry)
	02. 분광분석용 단일원소 표준용액 (Spectrometry, single element)
	03. 분광분석용 다중원소 표준용액 (Spectrometry, multi-element)
	04. 음이온 표준용액(Anion)
	05. 유기물분석용 표준용액(Organic standard solutions)
	06. 무기물분석용 표준용액(Inorganic standard solutions)
	07. 동위원소물질 표준용액(Stable isotopic chemical solution)
	08. 기타(Other)
106. 무기재료 및 광물 (Inorganics, rocks, ores)	01. 암석(Rocks)
	02. 흙(Soils)
	03. 광석(Ores)
	04. 시멘트(Cements)
	05. 내화물(Refractories)
	06. 세라믹(Ceramics)
	07. 유리(Glasses)
	08. 카바이드(Carbides)
	09. 기 타(Other)
107. 화공원료 및 화석연료	01. 석유/석탄(Petroleum/coal)

중분류	소분류
(Industrial chemicals and fossil fuels)	02. 정제유(Refined petroleum)
	03. 윤활유(Lubricants)
	04. 나프타(Naphtha)
	05. 염료 및 안료(Dyes and pigments)
	06. 기타 유기화공약품(Organic chemicals)
	07. 기타 무기화공약품(Inorganic chemicals)
	08. 기타(Other)
108. 식품 및 농업관련 물질 (Food & agricultures)	01. 곡류(Cereals and grains)
	02. 유제품(Dairy products)
	03. 육류(Meat)
	04. 어패류(Fishes and shellfishes)
	05. 과일 및 채소(Fruits and vegetables)
	06. 주류 및 음료(Alcohols and beverages)
	07. 비료 및 사료(Fertilizers and animal feeds)
	08. 농약(Agricultural chemicals)
	09. 성장호르몬 및 농업용 약품 (Growth hormones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s)
	10. 기타(Other)
109. 환경오염물질 (Environmental pollutions)	01. 수질오염(Water pollution)
	02. 대기오염(Air pollution)
	03. 토양오염(Soil pollution)
	04. 해양오염(Marine pollution)
	05. 퇴적물 및 슬러지(Sediments and water sludges)
	06. 지표생물(Indicator organism)
	07. 자연발생 생물학적 독성물질(Biological toxins)
	08. 기타(Other)
110. 보건 및 산업위생 (Health and industry hygiene)	01. 분진 및 비산재(Dust and fly ash)
	02. 석면(Asbestos)
	03. 여과재(Filter media)
	04. VOC 및 fume(VOC and fume)
	05. 페인트(Paint)
	06. 기타 작업환경 및 실내오염측정 (Working environment & indoor pollution)
	07. 인체잔류 지표물질 측정 (Body deposit of toxic materials)
	08. 기타(other)
111. 임상 및 생화학 물질	01. 임상화학 지표물질

중분류	소분류
(Clinical and biochemical materials)	(Indicator chemicals for clinical diagnosis)
	02. 중금속 및 무기물(Heavy metals and inorganics)
	03. 항생제(Antibiotics)
	04. 혈액제제(Blood products)
	05. 호르몬(Hormones)
	06. 면역조절물질(Biological response modifiers)
	07. 법의학 지표물질(Indicators of forensic science)
	08. 영양소(Nutrients)
	09. 의약품(Pharmaceuticals)
	10. 기타(Other)
112. 가 스 (Gaseous materials)	01. 공정관리용(Process controls)
	02. 의료용(Medicals)
	03. 공해측정용(Pollution controls)
	04. 시험연구용(Testing and research)
	05. 법의학용(Forensic science)
	06. 고순도가스(High purity gases)
	07. 기타(Other)
113. 고분자 (Polymers)	01. 고분자물질 조성(Polymers-composition)
	02. 고분자물질 첨가제(Polymer additive)
	03. 기타(Other)
114. 기타 화학조성 (Other chemical composition)	

나. 대분류 : 2. 물리적 특성(Physical Properties)

중분류	소분류
201. 이온활성 (Ion activity)	01. pH 교정(pH calibration)
	02. pD 교정(pD calibration)
	03. 이온선택성전극 교정(Ion-selective electrode calibration)
	04. 전기전도도(Electrolytic conductivity)
	05. 기타(Other)
202. 고분자물질 특성 (Polymeric properties)	01. 분자량 및 용융점(Molecular weight and melt flow)
	02. 기타(Other)
203. 열역학적 특성 (Thermodynamic properties)	01. 삼중점셀(Triple point cell)
	02. 응고점 및 용융점셀(Freezing point & melting point cell)
	03. 고정점 및 연속흑체로 (Fixed point & continuous blackbody furnace)
	04. 저항온도계(Resistance thermometer)
	05. 광온계(Pyrometer)
	06. 열전대(Thermocouple)
	07. 자기온도계(Magnetic thermometer)
	08. 텅스텐스트립전구(Tungsten strip lamp)
	09. 초전도고정점(Superconducting fixed point)
	10.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11. 열팽창계수(Thermal expansion)
	12. 비열(Specific heat)
	13.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
	14. 융점(Melting point)
	15. 기타(Other)
204. 광학적 특성 (Optical properties)	01. 표준전구(Standard lamps)
	① 광도(Luminous intensity)
	② 광휘도(Luminance)
	③ 전광선속(Total luminous flux)
	④ 조명도(Illuminance)
	⑤ 색온도(Color temperature)
	⑥ 분광복사조도(Spectral irradiance)
	⑦ 분광복사휘도(Spectral radiance)
	⑧ 분광복사속(Spectral radiant flux)
	02. 분광감응도(Spectral responsivity)
	03. 렌즈디옵터(Lens diopter)
	04. 굴절율(Refractive index)
	05. OTF(Optical transfer function)

중분류	소분류
	06. 투과율(Transmittance)
	07. 반사율(Reflectance)
	08. 파장교정필터(Wavelength calibration filter)
	09. 색표준(Color standard)
	10. 기타(Other)
205. 방사능 (Radioactivity)	01. 방사성 용액(Radioactive solution)
	① 알파입자(α -particle)
	② 베타입자(β -particle)
	③ 감마선(γ -ray)
	④ 전자(Electron)
	⑤ 혼합 감마선(Mixed γ -ray)
	02. 점선원(Point source)
	① 알파입자(α -particle)
	② 베타입자(β -particle)
	③ 감마선(γ -ray)
	④ 혼합 감마선(mixed γ -ray)
	03. 면적선원(Area source)
	① 알파입자(α -particle)
	② 베타입자(β -particle)
	③ 감마선(γ -ray)
	04. 방사성 기체(Radioactive gas)
	05. 환경감시(Environmental monitoring)
	① 알파 및 베타입자(α - and β -particles)
	② X-선 및 감마선(X-ray and γ -rays)
	③ 혼합감마선(Mixed γ -ray)
	06. 방사선 약학(Radio pharmacy)
	① 알파입자(α -particle)
	② 베타입자(β -particle)
	③ X-선 및 감마선(X- and γ -ray)
	07. Ra-226 용액(Ra-226 solution)
	08. 환경자연물질(Environmental natural matrix)
	09. 기타(Other)
206. 전기와 자기적 특성 (Electricity and magnetic properties)	01. 비저항(Electrical resistivity)
	① 도체(Conductors)
	② 반도체(Semiconductors)
	③ 부도체(Insulators)
	02. 유전율(Dielectric constant)

중분류	소분류
	03. 자화율(Magnetic susceptibility)
	04. 자기모멘트(Magnetic moment)
	05. 기타(Other)
207. 정밀측정 (Metrology)	01. 배율(Magnifications)
	02. 도금두께(Coating thickness)
	03. 박막두께(Thin-film thickness)
	04. 단차(Step height)
	05. 규소기판상 오염(Contamination on silicon wafer)
	06. 선폭(Line width : critical dimension)
	07. 밀도(Density)
	08. 액체점도(Liquid viscosity)
	09. 기타(Other)
208. 세라믹 및 유리 (Ceramics and glasses)	01. 유리의 화학적 내구성(Chemical resistance of glass)
	02. 유리 전기특성(Electrical properties of glass)
	03. 유리 점도(Viscosity of glass)
	04. 응력-광 계수(Stress-optical coefficient of glass)
	05. 유리 용융점(Glass liquidus temperature of glass)
	06. 기타(Other)
209. X-선 분광 (X-ray spectrometry)	01. X-선 회절(X-ray diffraction)
	02. X-선 스테이지 교정(X-ray stage calibration)
	03. 기타(Other)
210. 기타 물리적 특성 (Other physical properties)	

다. 대분류 : 3. 공학적 특성 (Engineering properties)

중분류	소분류
301. 입자특성 (Sizing)	01. 입자크기(Particle size)
	02. 시멘트 탁도 및 균질도(Cement turbidimetry and fineness)
	03. 분말의 비표면적(Surface area of powders)
	04. 분체의 표면전하(Surface charge)
	05. 기타(Other)
302. 표면특성 (Surface finish)	01. 마모(Abrasive wear)
	02. 부식(Corrosion)
	03. 표면거칠기(Surface roughness)
	04. 기타(Other)
303. 치 수 (Dimension)	01. 평면도(Optical flatness)
	02. 굴곡반경(Radius of curvature)
	03. 기타(Other)
304. 비파괴 평가 (Nondestructive Evaluation)	01. X-선필름감광도(X-ray film step tablet)
	02. 초음파 탐촉자(Ultrasonic probe)
	03. 초음파탐상 표준시험편(Standard test block for ultrasonic testing)
	04. 기타(Other)
305. 화재연구 (Fire research)	
306. 역학적 특성 (Mechanical properties)	01. 경도(Hardness)
	① 로크웰경도 C-스케일, 40이상/미만 (Rockwell hardness C-scale, 40up/down)
	② 로크웰경도 A-스케일, 60이상 (Rockwell hardness A-scale, 60up)
	③ 로크웰경도 B-스케일, 60이상/미만 (Rockwell hardness B-scale, 60up/down)
	④ 로크웰경도 30N-스케일, 43이상 (Rockwell hardness 30N-scale, 43up)
	⑤ 로크웰경도 30T-스케일, 36이상 (Rockwell hardness 30T-scale, 36up)
	⑥ 쇼아경도 80이상/미만 (Shore hardness 40up/down)
	⑦ 브리넬경도 225이상/미만 (Brinel hardness 225up/down)
	⑧ 비커스경도 (Vickers hardness)
	⑨ 미소비커스경도 (Micro-vickers hardness)
	⑩ 극미소경도 (Nano hardness)
	02. 충격(Impact)

중분류	소분류
	① Low energy ② Middle energy ③ High energy ④ Super high energy
	03. 기타(Other)
307. 기타 공학적 특성 (Other engineering properties)	

6.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한다.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의 인정범위는 시험물질, 시험항목 등을 포함하며, 시험방법, 시험범위 및 검출한계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1 진단혈액학 (Hematology)	1.01 일반혈액검사(Routine hematology)
	1.02 특수혈액검사(Specific hematology)
	1.03 지혈, 혈전(Hemostasis & thrombosis)
	1.04 골수검사(Bone marrow examination)
2 분자유전학 (Molecular genetics)	2.01 감염질환분자유전(Infected diseases)
	2.02 유전질환분자유전(Genetic diseases)
	2.03 약물 유전학(Pharmacogenetics)
	2.04 치매관련분자유전(Dementia-related examination)
	2.05 염기서열분석(Sequencing)
	2.06 돌연변이(Mutation)
	2.07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2.08 기타 분자유전학(Other examination)
3 세포유전학 (Cytogenetics)	3.01 FISH(FISH)
	3.02 SISH(SISH)
	3.03 염색체(Chromosome)
4 임상화학 (Clinical chemistry)	4.01 일반화학(Routine chemistry)
	4.02 효소(Enzyme)
	4.03 종양표지자(Tumor markers)
	4.04 지질.영양(Lipids and nutrition)
	4.05 혈장단백질(Plasma protein)
	4.06 당부하검사(Glucose tolerance)
	4.07 요화학검사(Urinalysis)
	4.08 체액 및 천자액(Body fluid and aspirates)
	4.09 약물 및 중금속 (Drug, toxicology and heavymetals)
	4.10 특수단백분리검사 (Seperation for specific proteins)
	4.11 내분비 검사(Endocrine function)
	4.12 대사이상질환(Metabolic disorders)

대분류	중분류
5 미생물학 (Microbiology)	5.01 세균 배양(Microbiologic culture)
	5.02 결핵균배양(TB culture)
	5.03 미생물 항원(Microbiologic antigen)
	5.04 바이러스배양(Virus culture)
	5.05 진균배양(Fungus culture)
	5.06 기생충(Parasites)
6 조직적합성 (Histocompatibility)	6.01 장기이식(HLA typing)
	6.02 장기이식 교차 검사(HLA cross matching)
	6.03 판넬 검사(PRA)
	6.04 세포면역 검사(Cellular immunity)
7 유세포검사 (Flow cytometry)	7.01 유세포 검사(Flow cytometry)
8 진단면역학 (Immunology)	8.01 감염증혈청(Infectious seology)
	8.02 바이러스성 간염 혈청(Viral hepatitis markers)
	8.03 자가면역질환(Autoimmunity)
	8.04 알러지(Allergy)
	8.05 기타 면역학(Other infection examination)
9 요검사(Urinalysis)	9.01 요검사(Urinalysis)
	9.02 정액(Sperm)
10 수혈의학 (Transfusion)	10.01 혈액형(ABO/Rh subtype)
	10.02 불규칙 항체 검사(Irregular antibody)
	10.03 교차시험(Cross match)
	10.04 에이페레시스(Aphereses)
11 조직병리학 (Histopathology)	11.01 동결절편(Frozen section)
	11.02 생검(Biopsy)
	11.03 절제(Resection)
	11.04 뼈조직검사(Bone tissue examination)
	11.05 조직탈회(Decalcification)
	11.06 말초신경분리검사(Peripheral nerve testing)
	11.07 편광현미경(Polarizaing microscopy)
	11.08 육안사진촬영(Gross photograph)

대분류	중분류
	11.09 슬라이드제작 (Making additional pathologic microslides)
	11.10 블록제작(Making additional paraffin block)
	11.11 외부슬라이드판독(전원증례) (Re-examination of outside microslides)
12 세포병리학 (Cytopathology)	12.01 부인과 세포검사(Gynecologic cytology)
	12.02 비부인과 세포검사(Non-gynecologic cytology)
	12.03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12.04 편광현미경(Polarizing microscopy)
	12.05 외부슬라이드 판독(전원증례) (Outside slide reading)
13 특수병리학 (Special pathology)	13.01 특수염색(Histochemistry)
	13.02 효소조직화학염색(Enzyme histochemistry)
	13.03 면역병리학 (Immunohistochemical/immunocytochemistry)
	13.04 면역형광(Immuno-fluorescence)
	13.05 부검(Autopsy)
	13.06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y)
	13.07 형태계측(Morphometry)

7. KOLAS 공인생물자원은 행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한다. KOLAS 공인 생물자원은행의 인정범위는 유형(실물, 데이터, 실물/데이터), 생물자원별 활동, 보관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대분류	중분류
1. 인체유래물 (Human)	1.01 임상역학정보 (Clinical & medical information)
	1.02 인체자원유래 데이터 (Human-derived data)
	1.03 기관 (Organ)
	1.04 조직 (Tissue)
	1.05 배아 (Embryo)
	1.06 혈액 (blood)
	1.07 체액 (biofluids)
	1.08 DNA, RNA, protein (DNA, RNA, protein)
	1.09 세포 (Cell)
	1.10 세포주 (Cell line)
	1.11 오가노이드 (Organoid)
	1.12 미생물 (Human-derived microorganism)
	1.13 기타 (Other)
2 동물 (Animal)	2.01 관찰(Observation)
	2.02 표본(Specimen)
	2.03 개체(Individual)
	2.04 기관(Organ)
	2.05 조직(Tissue)
	2.06 배아(Embryo)
	2.07 종자(Seed)
	2.08 균주(Strain)
	2.09 세포, 세포주(Cell & Cell line)
	2.10 체액(Biofluids)
	2.11 DNA, RNA, protein 유래물 (DNA·RNA·protein & derived materials)
	2.12 추출물(Extract)
	2.13 기타(Other)

대분류	중분류
3 식물 (Plant material)	3.01 관찰(Observation)
	3.02 표본(Specimen)
	3.03 개체(Individual)
	3.04 기관(Organ)
	3.05 조직(Tissue)
	3.06 배아(Embryo)
	3.07 종자(Seed)
	3.08 균주(Strain)
	3.09 세포, 세포주(Cell & Cell line)
	3.10 체액(Biofluids)
	3.11 DNA, RNA, protein 유래물 (DNA·RNA·protein & derived materials)
	3.12 추출물(Extract)
	3.13 기타(Other)
4 미생물 (Microorganism)	4.01 관찰(Observation)
	4.02 표본(Specimen)
	4.03 개체(Individual)
	4.04 기관(Organ)
	4.05 조직(Tissue)
	4.06 배아(Embryo)
	4.07 종자(Seed)
	4.08 균주(Strain)
	4.09 세포, 세포주(Cell & Cell line)
	4.10 체액(Biofluids)
	4.11 DNA, RNA, protein 유래물 (DNA·RNA·protein & derived materials)
	4.12 추출물(Extract)
	4.13 기타(Other)
5 기타 (Other)	5.01 관찰(Observation)
	5.02 표본(Specimen)
	5.03 개체(Individual)

대분류	중분류
	5.04 기관(Organ)
	5.05 조직(Tissue)
	5.06 배아(Embryo)
	5.07 종자(Seed)
	5.08 균주(Strain)
	5.09 세포, 세포주(Cell & Cell line)
	5.10 체액(Biofluids)
	5.11 DNA, RNA, protein 유래물 (DNA·RNA·protein & derived materials)
	5.12 추출물(Extract)
	5.13 기타(Other)

* ‘기타’, ‘기타 식물’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정 생물자원 및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한다.

(예시) 인체유래물/기타(머리카락), 식물/기타(분쇄소재) 등

8.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한다.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인정범위는 인증의 유형(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인증스킴, 제품의 범주, 기준문서 등을 포함한다.

대분류	중분류
01 농업, 임업 및 어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001 농업 (작물 재배업) (Agriculture(Growing of crops))
	01.002 농업 (축산업) (Agriculture(Animal production))
	01.003 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Agriculture(Services incidental to growing of crops and raising of animals))
	01.004 임업 (Forestry)
	01.005 어업 (Fishing and aquaculture)
02 광업 분야 (Mining and quarrying)	02.001 석탄 광업 (Mining of coal and ignite)
	02.00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2.003 금속 광업 (Mining of metal ores)
	02.004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Mining of non-metallic minerals, except fuel)
	02.005 광업 지원 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03 제조업 (Manufacturing)	03.001 축산물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nimal production food products)
	03.002 수산물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quatic food products)
	03.003 농산물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gricultural food products)
	03.004 기타 식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food products)
	03.005 알코올음료 제조업 (Manufacture of alcohol beverages)
	03.006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Manufacture of ice and non-alcohol beverage products of mineral water)
	03.007 담배 제조업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03.008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Spinning of textiles and processing of threads and yarns)

대분류	중분류
	03.009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Weaving of textiles and manufacture of textile products)
	03.010 편조원단 제조업 (Manufacture of knitted and crocheted fabrics)
	03.0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Dyeing and finishing of textiles and wearing apparel)
	03.01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made-up textile articles, except apparel)
	03.013 봉제의복 제조업 (Manufacture of sewn wearing apparel, except fur apparel)
	03.014 모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rticles of fur)
	03.015 편조의복 제조업 (Manufacture of knitted and crocheted apparel)
	03.016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Manufacture of apparel accessories)
	03.017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leather, luggage and similar products)
	03.018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twear and parts of footwear)
	03.019 제재 및 목재 가공업 (Sawmilling and planing of wood)
	03.020 나무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wood products)
	03.021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rticles of cork,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03.022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board)
	03.023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Manufacture of corrugated paper, paper boxes and paper containers)
	03.02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paper and paperboard products)
	03.025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Printing and service activities related to printing)
	03.026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and briquettes)
	03.027 석유 정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대분류	중분류
	03.02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and medical chemicals)
	03.02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 and botanical products)
	03.030 고무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ubber products)
	03.03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lastics products)
	03.03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glass and glass products)
	03.033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efractory and non-refractory ceramic products)
	03.034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ement, lime, plaster and its products)
	03.035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03.036 1차 금속 제조업 (Manufacture of basic metals)
	03.0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03.038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s; metalworking service activities)
	03.039 반도체 제조업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03.040 전자부품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03.04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Manufacture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03.042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pparatus)
	03.04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onic video and audio equipment)
	03.044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Manufacture of magnetic and optical medium)
	03.045 의료용 기기 제조업 (Manufacture of medical and dental instruments and supplies)
	03.046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anufacture of precise control equipment, optical instruments and clocks)

대분류	중분류
	03.047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ic motors, generators, transformers and electricity distribution and control apparatus)
	03.048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Manufacture of batteries and accumulators)
	03.049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Manufacture of insulated wires and cables)
	03.05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ic tubes and bulbs and lighting equipment)
	03.051 가정용 기기 제조업 (Manufacture of domestic appliances)
	03.052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electrical equipment)
	03.053 산업용 기계 제조업 (Manufacture of industrial machinery)
	03.054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Manufacture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03.055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special purpose machinery)
	03.056 자동차 및 관련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and related products)
	03.057 선박 및 보트 건조업 (Building of ships and boats)
	03.058 철도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railway locomotives and rolling stock)
	03.059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ircraft, spacecraft and its parts)
	03.060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03.061 가구 제조업 (Manufacture of furniture)
	03.062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Manufacture of jewellery, bijouterie and related articles)
	03.063 악기 제조업 (Manufacture of musical instruments)
	03.064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Manufacture of sports and athletic goods)
	03.065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Manufacture of dolls, toys and amusement goods)
	03.066 기타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products)

대분류	중분류
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04.001 전기업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04.002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Water supply, sewer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05.0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Water supply, Sewage and waste disposal activities)
	05.002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Recovering metal and non-metal waste)
	05.003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Other remediation activities and other waste management services)
06 건설업 (Construction)	06.001 종합 건설업 (General construction)
	06.00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Site preparation and construction of foundation works and structures)
	06.003 건물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업 (Construction of I installing and maintenance of building equipment)
	06.004 전기 및 통신 공사업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works)
	06.005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07 정보통신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07.001 출판업 (Publishing activities)
	07.002 방송, 영상제작 및 배급업 (Broadcast, production of motion pictures, video and television programs, and distribution activities)
	07.003 우편 및 통신업 (Postal activities and telecommunications)
	07.004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08 서비스업 (Services)	08.00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Sal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08.002 도매 및 상품중개업 (Wholesale trade on own account or on a fee or contract basis)
	08.003 소매업; 자동차 제외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08.00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via pipelines)
	08.005 수상 및 항공 운송업 (Water and air transport)

대분류	중분류
	08.00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08.007 숙박 및 음식점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08.0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08.009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landscape services)
	08.010 교육 서비스업 (Education)
	08.01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08.0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08.013 협회 및 단체 (Membership organizations)
09 GLOBALG.A.P.	09.001 작물 (Crop/Plants)
	09.002 축산 (Livestock)
	09.003 수산양식 (Aquaculture)

9. KOLAS 공인검증기관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고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인정범위는 활동유형(계획검증 및/또는 결과검증),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스킴,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준(표준) 등을 포함한다.

대분류	중분류
1. 환경정보 (Environmental Information)	1.01 제품탄소 발자국 (carbon footprints of products)
	1.02 탄소중립(선언) (carbon neutrality)
	1.03 기타 (other)
2. 산업/기술 (Industry/Technology)	2.01 건설 기술 (construction technology)
	2.02 에너지 관리 (energy management)
	2.03 재무 관리 (financial management)
	2.04 산업 자동화 시스템 (industrial automation system)
	2.05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software and system engineering)
	2.06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2.07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2.08 신기술 타당성 평가 (validation of new technology)
	2.09 기타 (other)
3. 안전 (Safety)	3.01 기계 안전 (machine safety)
	3.02 기업 재난 안전 (corporate disaster safety)
	3.03 안전 및 설계 엔지니어링 (safety and design engineering)
	3.04 기타 (other)
4. 지속 가능 (Sustainability)	4.01 기타 (other)
5. 정책 (Policy)	5.01 정책(예비타당성 조사/효과성 검증) (policy(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5.02 연구사업(사업계획서 계획검증/사업결과 검증) (research project (validation of a project plan / verification of project results))
	5.03 예산(연간사업계획 계획검증/사업실적 검증) (Budget(validation of an annual project plan / verification of project performance))
	5.04 기타 (other)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2]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제4조 관련)

1. KOLAS 공인교정기관

가.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

나.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다.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라.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마.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바. 교정·측정능력(CMC)산출 및 유지 관리지침

사. KS Q ISO/IEC 17025 해설서

아.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자.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차.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타. 해당되는 경우, KS P ISO 15195 (메디컬시험기관 - 기준측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2. KOLAS 공인시험기관

가.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

나.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다. 현장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라.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 기술요건

마.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바.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사. KS Q ISO/IEC 17025 해설서

아.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자.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3. KOLAS 공인검사기관

가. KS Q ISO/IEC 17020

(적합성평가 -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ISO/IEC 17020)

나.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다. KS Q ISO/IEC 17020 해설서

라.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마.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바.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 기술요건

4.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가. KS Q ISO/IEC 17043

(적합성평가-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43)

나.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다.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라.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마.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바. KS Q ISO/IEC 17043 해설서

사. 해당되는 경우,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5.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가. KS A ISO 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 17034)

나.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 - 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드스)

다. KS A ISO Guide 31

(표준물질 - 인증서, 라벨 및 첨부문서의 내용)

라.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마.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사.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아. KS A ISO 17034 해설서

6.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가. KS Q ISO 15189

(메디컬 시험기관 — 품질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 ISO 15189)

나.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다.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라.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마.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바.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사. KS Q ISO 15189 해설서

아. 해당되는 경우,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7.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가. KS J ISO 20387

(생명공학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생물자원은행 운영의 일반 요구사항, ISO 20387)

나.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다.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라. KS J ISO 20387 해설서

마. 해당되는 경우,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바.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 기술요건

8.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가.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나.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다.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라. KS Q ISO/IEC 17065 해설서

마. 해당되는 경우, 인증스킴 소유주의 추가요구사항

바.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기술요건

9. KOLAS 공인검증기관

가. KS Q ISO/IEC 17029

(적합성평가 -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나. 환경정보 분야의 경우, KS I ISO 14065(환경정보 - 환경정보 검증기관에 관한 요구사항)

다.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라.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

마. 해당되는 경우,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스킴 소유주의 추가요구사항

바.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기술요건

사. KS Q ISO/IEC 17029 해설서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3]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서류(제8조 관련)

1. KOLAS 공인교정기관

- 가. 일반현황(교정기관 유형 등)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나. 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현장교정 가능여부(Y, N)를 표기
- 다. 주요 장비 보유 현황
- 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 마. 표준실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 바. 숙련도시험 참가 계획 및 실적 확보 내역
- 사. 해당되는 경우, 성적서 발행건수 및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 아.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에 해당)

2. KOLAS 공인시험기관

- 가. 일반현황(시험기관 유형 등)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나. 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 및 현장시험 항목을 표기 포함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내부교정을 여부(Y, N)를 표시
- 다. 주요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 마. 숙련도시험 참가 계획 및 실적 확보 내역
- 바. 해당되는 경우, 성적서 발행건수 및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사.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에 해당)

3. KOLAS 공인검사기관

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 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나. 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내부교정을 여부(Y, N)를 표시

다. 주요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마. 해당되는 경우, 성적서 발행건수 및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바.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에 해당)

4.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 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나. 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

다.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라. 숙련도시험 스킴 운영계획서

마. 숙련도시험 참가 계획 및 실적 확보 내역

바. 해당되는 경우, 성적서 발행건수 및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사.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에 해당)

5.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
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
식) 제출)
- 나. 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
- 다. 주요 장비 보유 현황
- 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 마. 표준물질 생산계획서 및 위탁기관과의 업무협력 흐름도
- 바. 표준물질의 특성화 방법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보고서
- 사. 숙련도시험 참가 계획 및 실적 확보 내역
- 아. 해당되는 경우, 성적서 발행건수 및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 자.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
를 위한 문서에 해당)

6.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
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
식) 제출)
- 나. 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정보통
합시스템에 내부교정을 여부(Y, N)를 표시
- 다. 주요 장비 보유 현황
- 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 마. 숙련도시험 참가 계획 및 실적 확보 내역
- 바. 해당되는 경우, 성적서 발행건수 및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 사.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
를 위한 문서에 해당)

7. KOLAS 공인생물자원은 행

- 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
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
식) 제출)
- 나. 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정보통
합시스템에 내부교정을 여부(Y, N)를 표시
- 다. 주요 생물자원 보존·관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 마. 생물자원 및 관련 데이터 보유 현황
- 바.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authentication) 발행건수 및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 사.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
를 위한 문서에 해당)

8.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 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
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
식) 제출), 정관(제3자 기관임을 확인)
- 나.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
- 다. 해당되는 경우, 주요 장비 보유 현황
- 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 마. 인증기관의 운영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 등이 포함된 적절한 협정증명서
(책임보험증서 사본 등)
- 바. 해당 인증스킴의 인증 권한 입증자료(예 : 인증스킴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계약 또는 신청서 등, 자체 인증스킴인 경우, 특허청장이
발급한 상표 등록증(증명표장**) 등)

* 다만, 인정스킴소유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정 획득이 우선인 경우 해당 사

항을 입증하면 생략 가능

** 증명표장 등록 시 인증 대상을 지정상품으로 등록 필요

사. 인증스킴 규정문서(인증절차, 인증기준 리스트 및 사본 포함)

* KOLAS와 사전협약된 스킴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무국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아. 인증 마크 및 라벨 사본

자. 해당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국가 및 각 국가에서 발행된 인증실적(해당 인증마크별), 해당 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상의 신원 등을 포함하여 인증 제품의 리스트

차. 시험, 검사, 및/또는 심사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신원 정보(기관명, 주소, 법적지위 등)와 관계 및 위탁범위

카. 해당되는 경우, 해외소재 고정지역 사무소나 원격 인력자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관리하는 신청기관의 협정 (직원 및 국가현황 포함)

타. 해당되는 경우,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또는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파.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에 해당)

9. KOLAS 공인검증기관

가.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 인증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나.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 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계획검증 또는 결과검증 스킴에 대한 업무현황자료(운영계획서, 검증 또는 모의 검증 실적 등, 스킴별 1건 이상)

라. 계획검증 또는 결과검증 스킴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문서
* KOLAS와 사전협약된 스킴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무국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마.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 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자료에 해당)

바. 해당되는 경우, 검증서 발행건수 및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사. 경영시스템 문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에 해당)

아. 입회 가능한 검증대상 기관 목록 및 일정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4]

결함의 분류(제17조 관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인력·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분	항 목
1. 치명적 사항	가. 인정기준에 의거 갖추어야 할 절차가 시스템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전혀 이행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인정신청 분야 및 범위의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KOLAS 공인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다. 필수적인 원시데이터 등 기술기록의 전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라. 해당분야 기술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없이 KOLAS 공인성적서(인증서 등)를 발급한 경우 마. 소급성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시험/측정 장비 또는 (인증)표준물질을 사용하여 KOLAS 공인성적서를 발행한 경우 바. 교차오염 등 관련 시설 및 환경이 신청한 인정분야 및 범위의 시험/측정을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에서 KOLAS 공인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공인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인정행위에 대한 입증된 근거가 있고 공인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인정규정을 위반한 경우) 아. ISO 26000과 같이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으로 인증을 제공하거나 주장하는 등 인증을 오용하는 경우(입증된 근거가 있고 인증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인정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 휴업기간 또는 정지기간 중 KOLAS의 인정 또는 KOLAS 공인성적서 발급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인기관의 지위를 활용하는 경우 차. 휴업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카.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에 대한 공모가 발견된 경우 타. 기타 위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결함

구분	항 목
2. 중대한 사항	가. 인정신청 분야 및 범위와 관련된 시설 및 환경, 시험/측정 장비가 부적절한 상태나 시험방법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KOLAS 공인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나. 필수적인 원시데이터 등 기술기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확보 사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다. 핵심 인력(기술책임자, 품질책임자, 실무자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마.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공인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인증기관의 행위가 인정기구의 ISO/IEC 17011 4.4.11에 대한 위반을 초래하거나, 인정표시의 오용 또는 오기로 인한 잘못된 홍보를 초래한 경우) 바. ISO 26000과 같이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으로 인증을 제공하거나 주장하는 등 인증을 오용하는 경우(인증기관의 행위가 인정기구의 ISO/IEC 17011 4.4.11에 대한 위반을 초래하거나, 인정표시의 오용 또는 오기로 인한 잘못된 홍보를 초래한 경우) 사. 인정기준에 규정된 숙련도시험 참가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숙련도시험 결과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후 기간 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 기타 위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결함
3. 경미한 사항	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 실수로서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6)을 준수하지 않고 인정표시를 오용하여 KOLAS 공인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1) KOLAS 공인성적서 발행시 동일 표준 내에서 인정받지 않은 일부 항목의 결과가 포함됨에도 해당 범위의 결과가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KOLAS 공인성적서 내에 인정받지 않은 표준을 포함하고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음을 포함하여 표시한 경우 나. 기타 위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결함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5]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의 역량기준(제19조 관련)

KOLAS 공인기관은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해 다음의 역량기준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적합성평가활동에 적합한 적격성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부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적합성평가스킴별 요구사항에 따른다.

1. 기술책임자의 역량기준

- 가. 해당 법규 및 별표 2의 인정스킴별 KOLAS 공인기관 및 인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나. 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자의 실무교육 능력,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다. 실무자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실무자의 역량기준

가. KOLAS 공인교정기관

- 1) 교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능력
- 2) 측정설비 및 측정기의 운용능력
- 3) 보유교정결과에 대한 해석능력
- 4) 측정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능력
- 5) 측정불확도 평가 능력

나.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 1) 시험검사방법 및 규격에 대한 이해 능력
- 2) 시험검사장비 및 측정기기 운용 능력
- 3)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
- 4) 시험검사장비의 점검·유지관리 능력
- 5) 시험분야의 경우, 측정불확도 평가 능력

다.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 1) 적절한 숙련도시험아이템 선정
- 2) 숙련도시험 스킴 설계
- 3) 특정 유형의 샘플링 검토
- 4) 균질성 및 단기 안정도 수행 확인
- 5) 숙련도시험아이템 준비, 취급 및 배포에 대한 관리

- 6) 데이터 처리 시스템 운영
- 7) 통계 분석 수행
- 8) 숙련도시험 참가자의 수행도 평가
- 9) 숙련도시험 보고서 작성

라.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1) 생산·측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 2) 생산·측정설비 및 장비 운용능력 보유
- 3) 해당분야 측정 불확도 산정능력 보유
- 4) 인증서 작성 및 측정결과에 대한 해석능력 보유

마.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1) 시험방법 및 규격에 대한 이해 능력
- 2) 시험장비 및 측정기기 운용 능력
- 3)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
- 4) 시험장비의 점검·유지관리 능력

바.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 1)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 2) 설비 및 장비 운용능력 보유
- 3)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작성 및 측정결과에 대한 해석능력 보유
- 4) 생물자원별 특성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 5) 생물안전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 6) 해당되는 경우,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인체유래물은 필수)

사.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실무자(인증심사원)는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능력
- 2) 인증방법과 절차 및 품질시스템 이해 및 관리 능력
- 3) 인증스킴 및 인증제품의 형식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 4)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평가 능력
- 5) 인증심사, 인증서 작성 및 인증결과 해석에 대한 능력

아. KOLAS 공인검증기관

실무자(타당성평가 및 검증심사원)는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관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기준에 대한 이해 능력
- 2)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방법과 절차 및 품질시스템 이해 및 관리 능력
- 3)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스킴의 형식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심사,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 작성 및 결과 해석에 대한 능력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1)]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5:2017 에 의거하여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교정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국인정기구장

직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 서명기구입니다.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Calibration Laborator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Laborator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calibration laborator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5:2017.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er to Joint ISO-ILAC-IAF Communiqué).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is a signatory to the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2)]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5:2017 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국인정기구장

직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 서명기구입니다.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Testing Laborator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Laborator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testing laborator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5:2017.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er to Joint ISO-ILAC-IAF Communiqué).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is a signatory to the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3)]

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검 사 기 관 유 형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0:2012에 의거하여 KOLAS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합니다.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직 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Inspection Laborator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Inspection Bod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Type of Inspection Body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inspection bod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0 : 2012.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inspection body quality management system.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4)]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43:2023 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직 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 서명기구입니다.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43 : 2023.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er to Joint ISO-ILAC-IAF Communiqué).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is a signatory to the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5)]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A ISO 17034:2016 에 의거하여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표준물질생산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직 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 서명기구입니다.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Reference Material Producer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Reference Material Producer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reference material producer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 17034:2016.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reference material producer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er to Joint ISO-ILAC-IAF Communiqué).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is a signatory to the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6)]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 15189:2022에 의거하여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메디컬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직 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 서명기구입니다.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Medical Testing Laborator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Testing Laborator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medical testing laborator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 15189:2022.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medical testing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er to Joint ISO-ILAC-IAF Communiqué).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is a signatory to the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7)]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J ISO 20387:2018 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합니다.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직 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Biobank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Biobank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biobank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 20387 : 2018.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biobank quality management system.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8)]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인 증 유 형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65:2012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제품인증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직 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인정기구포럼(IAF)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서명기구입니다.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Product 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Product Certification Bod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Type of Certific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Product Certification Bod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65 : 2012.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certification body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er to Joint ISO-ILAC-IAF Communiqué).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is a signatory to the IAF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9)]

KOLAS 공인검증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인 정 일 자 :
인 정 유효 기 간 :
활 동 유 형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9:2019에 의거하여 KOLAS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검증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 국 인 정 기 구 장

직 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인정기구포럼(IAF)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서명기구입니다.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Validation/Verification Bod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Validation/Verification Bod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Validity of Accreditation :

Type of Activity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Bod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9:2019.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competence of the body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operations within the accreditation scope.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certification body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er to Joint ISO-ILAC-IAF Communiqué).



Head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is a signatory to the IAF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서약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소	

본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에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함에 있어 한국인정기구의 인정기준 및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에 신청 및 인정받은 인정범위에 대해 한국인정기구의 인정기준 및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것을 약속하고 충족의 증거를 제공하며 인정기준 및 관련규정의 변경을 수용합니다.
- 본 기관은 인정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본 기관은 한국인정기구가 인정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본 기관의 인원, 장소, 장비, 정보,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습니다.
- 본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활동에 대한 입회를 준비하겠습니다.
- 본 기관은 의뢰인의 소재지에서 적합성평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인정기구가 요청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반의 접근을 허락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의뢰인과 체결하겠습니다.
- 본 기관은 인정받은 인정범위에 대해서만 인정을 주장하며 인정마크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 및 인정마크 사용 관련 한국인정기구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의사소통(communication) 매체에서 인정을 언급할 때, 인정상태에 대한 주장은 한국인정기구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준수한다.
 - 인정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중지한다.
 - 인정을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경영시스템 또는 사람에 대한 한국인정기구의 승인이란 의미로 언급하지 않는다.
 - 인정의 정지, 축소 또는 취소와 이로 인한 관련 영향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의뢰인에 통보한다.
 - 인정마크 및 ILAC-MRA(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KOLAS 공인성적서(또는 인증서) 발급실적을 정기적(년 1회 이상)으로 한국인정기구에 보고한다.
 - 제품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경우, 본 기관은 인정받은 인정범위 내에서 공인인증서가 아닌 비공인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 본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의 명예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어떠한 방식

으로도 인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정서를 오용하거나 잘못된 성적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8. 본 기관은 인정과 관련된 중요한 다음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한국인정기구에 통지하겠습니다.

가. 기관명,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나.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다. 소재지 변경 또는 주요 설비 이동

라.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마. 대표자, 품질책임자(정, 부), 기술책임자(정, 부)의 변경

바. 인정분야 및 범위 변경

사. 기타 인정기준에 대한 공인기관의 능력 충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9. 본 기관은 평가의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인정기구가 정한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인정과 관련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본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에 문의된 공인기관의 인정관련 불만 및/또는 부정행위의 조사 및 해결에 협조하겠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처분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정기구가 국제기구로 이를 통보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11. 본 기관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등록신청서

[] 품질책임자 (정, 부) [] 기술책임자 (정, 부)

구분	[] 교정 [] 시험 [] 검증	[] 메디컬시험 [] 표준물질생산	[] 검사 [] 제품인증	[] 숙련도시험운영 [] 생물자원은행운영
신청자	이름 (국문)		소속	
	직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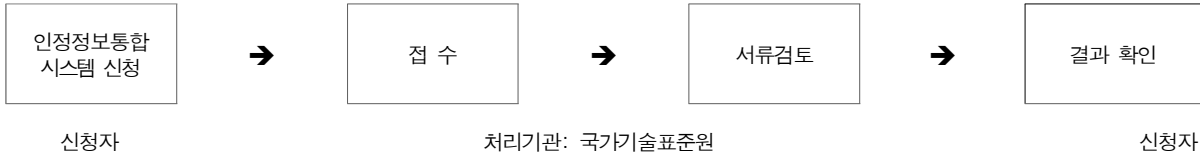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2. 교육 합격증 및 보수교육 수료증 * 모든 문서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	수수료 해당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 (대상기관)	기관명
---------------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 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KOLAS 공인기관의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인정기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작성방법	1. 이용사무(이용 목적)의 동의 여부를 서명(또는 인)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2.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3. 성명 및 전화번호 : 민원인(고객)의 본인의 성명 및 직장·주택·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